



# 일본의 특정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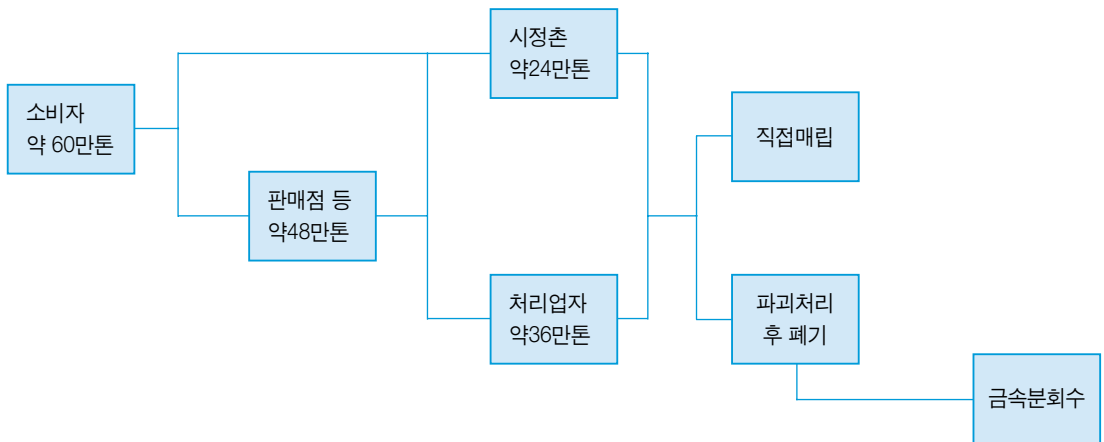
현재 일본의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전(家電) 제품의 약 80%는 소매업자에 의하여, 약 20%는 직접 시정촌(市町村)에 의하여 회수되고 있다. 이렇게 회수된 가전제품의 절반은 직접 매립되고, 나머지는 파괴 처리되고 있다. 또한 금속분의 경우 일부는 회수 처리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이렇게 폐기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매립지 또한 매우 궁핍한 실정이다.

재상품화 등을 도모하고 순환형 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전제품 등의 제조업자 등 및 소매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재상품화의 조직을 구축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특정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가전리사이클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법은 1998년(평성10년) 6월 5일 법률 제97호로 제정되었으며, 2003년(평성15년) 6월 18일 법률 제93호로 최종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폐기물의 감량과 유용한 부품·소재의

현재 가전제품(에어콘,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의 처리의 흐름



동법을 시행한 이후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리사이클 실적을 정리한 결과를 보면, 2001년 4월에 시행된 가전 리사이클법(특정 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에 근거한, 폐가전(廢家電) 4대 품목(에어콘, 텔레비전,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의 2002년도 전국의 지정 회수 장소에서 회수한 폐가전 리사이클 실적은 2001년도 대비 19% 증가한 1,015만 대에 달하였다. 동법의 시행 후 2년째인 2002년도의 이러한 실적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가전리사이클 제도가 착실히 정착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정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1)」에서는 제1장 총칙(제1~2조), 제2장 기본방침 등(제3~8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2)」에서는 제3장 소매업자의 수집 및 운반(9~16조), 제4장 제조업자 등의 재상품화 등의 실시(제17~31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3)」에서는 제5장 지정법인(제32~42조), 제6장 잡칙(제43~57조), 제7장 벌칙(제58~62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I. 제1장 총칙

### 1. 목적

#### (제1조)

동 법률은, 특정 가정용 기기의 소매업자 및

제조업자 등에 의한 특정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및 재상품화 등에 관계되어, 이것을 적절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에 따라, 폐기물의 감량 및 재생 자원의 충분한 이용 등을 통해,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생활 환경의 보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조는 특정 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의 전체의 목적·취지와 함께 폐기물 처리·리사이클 관련 법률안에 있어서 위치 설정을 나타내고 있다. 즉, 동 법률은 ‘생활환경의 보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의 확보’를 도모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및 재상품화 등에 관련하여 이를 적절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동 법률은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sup>1)</sup> 및 재생 자원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sup>2)</sup>이란 두 가지 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폐기물의 감량’이란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의 억제와 폐기된 후 최종적으로 매립 등의

\*\*\* -----

1) 이하 폐기물 처리법이라고 한다.

2) 이하 재생자원 이용 촉진법이라고 한다. 동법은 2001년 4월 1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처분이 되는 폐기물의 양의 삭감의 양쪽 모두를 의미하고, '재생 자원의 충분한 이용 등' 이란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의무로 하고 있는 재생품화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재생 자원을 넓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재생 자원' 이란 재생 자원 이용 촉진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원재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란 폐기물의 처리가 일본 생활환경의 관점에서 보전에 지장없게 행하는 것, 마지막으로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확보' 란 재생품화 등을 제조업자 등의 의무로 부여함으로써 원재료 및 에너지원으로서의 자원이 한층 유효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정의

### (제2조)

동 법률에 있어서 기계 기구가 폐기물(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소화 45년 법률 제137호 이하 「폐기물 처리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폐기물을 말함. 이하 동일)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재생품화」란 다음에 기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기계 기구가 폐기물이 된 것으로부터 부품 및 재료를 분리해,<sup>3)</sup> 스스로 이것을

제품의 부품 또는 원재료로서 이용하는 행위

(2) 폐기물이 된 기계 기구로부터 부품 및 재료를 분리해, 이것을 제품의 부품 또는 원재료로 이용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상태로 하는 행위

2. 동 법률에 있어 폐기물이 된 기계 기구로부터의 「열회수」는 다음에 기재한 행위를 말한다.

(1) 폐기물이 된 기계 기구로부터 분리한 부품 및 재료 중 재생품화된 것 이외의 것이며, 연소의 용도로 제공할 수가 있는 것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열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이용하는 행위

(2) 폐기물이 된 기계 기구로부터 분리한 부품 및 재료 중 재생품화된 것 이외의 것이며, 연소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열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상태로 하는 행위

3. 동 법률에 있어서 폐기물이 된 기계기구의 「재생품화 등」이란, 재생품화 및 열회수를 말한다.<sup>4)</sup>

4. 동 법률에 있어서 「특정 가정용 기기」란 일반소비자<sup>5)</sup>가 통상 생활의 용도에 제공하

\*\*\*

3) 예를 들면, 부분적인 보수·수리를 하거나 기계 기구를 그대로 재차 판매하는 행위는 '재생품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전기 기계 기구 그 외의 기계 기구이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sup>6)</sup>

- (1) 시정촌(市町村) 등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설비 및 기술에 비추어 해당 기계 기구가 폐기물이 되었을 경우 그 재상품화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
- (2) 해당 기계 기구가 폐기물이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상품화 등이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 중 해당 재상품화 등과 관련되는 경제성의 면에 있어서의 제약이 현저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sup>7)</sup>
- (3) 해당 기계 기구의 설계 또는 그 부품 혹은 원재료의 선택이, 해당 기계 기구가 폐기물이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재상품화 등의 실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것
- (4) 해당 기계 기구의 소매 판매(사업자에

대한 판매를 포함해, 판매를 업으로써 실시하는 자에 대한 판매를 제외. 이하 동일)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 소매 판매를 한 당해 기계 기구의 상당수를 배달하고 있음에 의하여, 해당 기계 기구가 폐기물로 된 것에 대하여 해당 기계 기구의 소매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에 의한 원활한 수집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5. 동 법률에 있어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이란, 특정 가정용 기기가 폐기물이 된 것을 말한다.

6. 동 법률에 있어서 특정 가정용 기기에 대하여 「제조 등」이란 다음에 기재된 행위를 말한다.<sup>8)</sup>

- (1) 특정 가정용 기기를 제조하는 행위(다른 자(외환 및 외국 무역법(소화 24년 법률 제228호) 제6조에서 규정한 비거주자는 제외. 이하 동항에서 동일)의 위

### \*\*\* -----

- 4) 동 법률에서는 재상품화와 열회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상품화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재상품화가 열회수에 우선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 5) '일반소비자'란 평균적인 가정을 가리키며, '통상 생활의 용도로 제공한다'란 평균적인 가정에 있어 폭넓게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소비자 전용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기계 기구여도 특별히 보급율이 낮은 것은 특정 가정용 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6) 특정 가정용 기기재상품화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면, 특정 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 제2조 제4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란 ① 유니트형 에어컨디셔너(윈도우형 에어컨디셔너 또는 실내 유니트형 또는 마루형 내지 세퍼레이트형 에어컨디셔너에 한정), ② 텔레비전 수신기(브라운관식에 한정), ③ 전기 냉장고 및 전기 냉동고, ④ 전기세탁기를 말한다.
- 7) 현재 주요한 가전제품인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를 보아도 연간 1600~1800만대(약 65만달러(1997년 추계)) 정도가 폐기됨. 이러한 기기에는 철, 동,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등 다시 원재료 또는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들이더라도 리사이클을 진행시킬 가치가 있는 것을 본 법률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탁(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 이하 동항에서 동일)을 받아 실시하는 것을 제외)

- (2) 특정 가정용 기기를 수입하는 행위(다른 자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것을 제외)
- (3) 전 2호로 게재된 행위를 다른 자에 대한 위탁을 하는 행위

동조의 입법 취지는 「특정 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에서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1항에서는 법률의 제목에도 있는 ‘재상품화’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즉, ‘재상품화’란 제품의 부품 또는 원재료로서 이용하는 행위를 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스스로 직접 행하는 것 또는 ② 그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인수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항에서는 제조업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재상품화 등’에 해당하는 ‘열회수’를 정의하고 있다. ‘열회수’란 리사이클 가운데 이른바 ‘서멀·리사이클’을 의미한다. 제3항에서의 ‘재상품화 등’은 ‘재상품화’와 ‘열회수’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재상품화 등’이란 ‘재상품화와 열회수’를 포함하며, 동 법률에서 재상품화가 열회수에 우선해야 한다. 제4항에서는 동 법률의 대상이 되는 ‘특정 가정용 기기’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동 법률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계 기구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 법률의 구조에 의해 리사이클을 진행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정령으로 ‘특정 가정용 기기’로서 지정한다. 동 법률로 그 리사이클을 진행시키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4항에서 게재된 4개의 호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폐기된 ‘특정 가정용기기’는 소매업자에 의해 수집·운반 되고, 제조업자 등에 의해 재상품화 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정령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됨으로써 처음으로 ‘특정 가정용 기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개의 호의 요건에 해당되고 동 법률로 정하는 조치에 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상품화 등이 원활히 실시되는 것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정령으로 ‘특정 가정용 기기’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제5항에서는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동 법률의 인수 의무, 재상품화 등 의무

\*\*\* -----

8) 동조 동항에서 동 법률로 재상품화 등의 의무를 지는 자는 특정 가정용기그릇을 제조·수입한 자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조나 수입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케이스가 존재하고, 제조 위탁 등을 했을 경우에는 그 위탁원이 특정 가정용 기기의 사양 등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사양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동 법률에서는 제조·수입의 위탁원을 재상품화 등의 의무자로 한다고 함이 동항의 취지이다.

의 대상이 되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항에서는 동 법률로 재상품화 등의 의무를 지는 자는 특정 가정용 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자로 한다. 그러나 제조나 수입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사례가 존재하여, 제조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위탁원이 특정 가정용 기기의 사양 등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 사양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동 법률에서는 제조·수입의 위탁원을 재상품화 등의 의무자로 한다고 하는 것이 동항의 취지이다.

## II. 제 2 장 기본방침 등

### 1. 기본방침(제 3 조)

#### (제 3 조)

주무 대신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및 재상품화 등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상품화 등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고 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게재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및 재상품화 등의 기본적 방향

(2)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배출의 억제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및 재상품화 등의 추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의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의 의의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관련되는 사항

(5) 그 외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및 재상품화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주무 대신은,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또는 이것을 변경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동 법률의 목적인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의 추진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소비자, 소매업자, 운반업자, 제조업자, 수입업자, 지방자치체 등 관계자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무대신이 기본방침을 책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항의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및 재상품화 등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는 동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목표로 해야 할 기본적 방향을 정해 관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





을 실시하는 의의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제2조 제2항의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배출의 억제’를 위한 방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률의 목적인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배출억제를 위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스스로 제조나 수입을 한 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조 단계에서 노력하고, 또한 소비자나 사업자가 수리·정비하여 특정 가정용 기기를 가능한 한 장기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2조 제3항에서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및 재상품화 등의 촉진을 위한 방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매업자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 인도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체제를 정비하는 것,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실시하는 재상품화 등 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추진, 제조·설계 단계에 있어서의 공리의 촉진, 시정촌(市町村)의 동 법률에 있어서의 역할, 그 외 재상품화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책을 정하고 있다. 제2조 제4항에서는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의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의 의의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의 촉진을 위해, 관계자가 그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이 재상품화 등의 촉진이 환경의 보전 전제 위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양한 수단으로 보급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제2조 제5항에서는 ‘그 외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및 재상품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과 관련해서는 제2항 제1호부터 제2항 제4호까지의 사항 외,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및 재상품화 등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2. 제조업자 등의 책무

### (제4조)

특정 가정용 기기의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 등」을 말함)는 특정 가정용 기기의 내구성의 향상 및 수리의 실시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 등에 의해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특정 가정용 기기의 설계 및 그 부품 또는 원재료의 선택을 공리함으로써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조의 입법취지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배출의 억제, 재상품화 등의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 이외의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제조나 수입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조업자 등’이란 현재·계속·반복하여 특정 가정용 기기의 제조 등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특정 가정용 기기의 제조 등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자연인 사망, 법인격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 포함)는 제외된다.

### 3. 소매업자의 책무

#### (제5조)

특정 가정용 기기의 소매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소매업자」라고 함)는 소비자가 특정 가정용 기기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함께, 소비자에 의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조의 입법취지는 소매업자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 그 이외의 특정 가정용 기기의 소매 판매의 종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소매업자란 현재·계속·반복하여 특정 가정용 기기의 소매 판매를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현재, 특정 가정용 기기의 소매 판매의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자연인 사망, 법인격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 포함)은 제외된다. 또한 복수 종류의 특정 가정용 기기의 소매 판매를 실시하고 있던 자가 그 중의 일부 특정 가정용 기기의 소매 판매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매 판매를 폐지해 버린 특정 가정용 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소매업자

에 해당되지 않는다. 덧붙여 ‘실시한다’란 사실로서 ‘소매 판매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이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 4. 사업자 및 소비자의 책무

#### (제6조)

사업자 및 소비자는, 특정 가정용 기기를 가능한 한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이 확실히 되도록,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혹은 운반을 하는 자 또는 재상품화 등을 하는 자에게 적절히 인도해, 그 요구에 응하고 요금의 지급에 응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가 동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동조의 입법취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특정 가정용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해, 특정 가정용 기기를 가능한 한 장기간 사용하도록 기대함과 함께 배출에 있어서 소매업자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요금을 지급하고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도하는 등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및 재상품화





등의 추진에 협력하도록 함에 있다. 여기에서 동 법률의 대상이 되는 특정 가정용 기기는 통상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특정 가정용 기기를 사용해 배출하는 자는 일반 가정의 소비자인 경우도 있고, 사업소의 사업자인 경우도 있다. 이에 동조에서는 특정 가정용 기기의 사용자로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 5. 국가의 책무

#### (제7조)

국가는 특정 가정용 기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활용,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및 재상품화 등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국가는 전조의 사업자 및 소비자의 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에 필요로 한 비용, 그 재상품화 등에 의해 유효하게 이용된 자본의 양 이외의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국가는 교육 활동, 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상품화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 실시에 관한 국민의 협력을 요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조의 입법취지는 동 법률에 규정하는 조치를 통해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상품화 등을 원활히 실시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소·도매업자 및 특정 가정용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소비자의 협력을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를 정하고 있다. 나아가, ‘특정 가정용 기기의 배출을 억제한다’는 것은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대량생산·대량 소비형 사회의 도래 등과 관련하여 주위 가전제품이 연달아 개발·판매됨으로써 그 사용자도 관련 제품을 단기간 교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배출을 증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동 법률의 목적 중 하나인 폐기물의 감량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 가정용 기기의 사용자에 대해, 특정 가정용 기기를 보다 장기간 사용하는 것으로써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배출 자체를 억제하고자 함에 있다.

### 6.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 (제8조)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市町村)은 국가의 시책에 따라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및 재상품화 등을 촉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市町村)은 국가의 정책에 준하여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 물건의 수집 및 운반 및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가의 정책에 준하여'란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市町村)이 각각의 지역의 실정을 근거로 하여 보급 계발 활동을 개시하여 국가가 강

구하고자 하는 조치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의미이다.

**고재종**  
(선문대 법대 교수)